

법제교류 자료 10-15-11

2010. 9. 28.



일 정

- 일 시 : 2010년 9월 28일 (화) 13:00~17:00
- 장 소 : 디오디아
- 주 제 :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지하자원 법제
- 세부일정 :
 - 주 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지하자원 법제
발 제: 박광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 론: 김한철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경희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목 차

요 약.....	5
PART I : 우즈베키스탄의 현황	9
▣ 개 요.....	9
▣ 관련 정부조직과 집행법률.....	11
PART II : 주요 관련 집행법률	19
▣ 사유화법(Закон О разгосударствении и приватизации).....	19
▣ 하층토법(Закон О недрах).....	21
▣ 자연독점법(Закон О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олиях).....	28
▣ 외국인투자법.....	30
PART III : 광업자원의 현황과 법제	35
▣ 광업개요.....	35
▣ 광업관련법령 - 지하자원법.....	36
▣ 국유 광업 자산의 일부 매각의 움직임.....	42
▣ 환경법.....	43
PART IV : 정책 제언	47
▣ 패키지형 교류 지향.....	47

제 목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지하자원 법제		
소제목			
부 서	글로벌법제연구센터	연구진	박 광 동
[요 약]			
PART I : 우즈베키스탄의 현황			
<input type="checkbox"/>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 2월 11일 가스전과 화학플랜트 건설사업 등이 결합된 총 30억달러 규모의 수르길 프로젝트를 양국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음. 이 프로젝트는 우즈벡 수르길의 가스전 개발과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이 결합된 사업임.			
<input type="checkbox"/>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가스전(6억달러) 개발과 화학플랜트 (24억달러) 건설로 추진되는 수르길 프로젝트 투자협정서를 체결하고 향후 압축천연가스(CNG)등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음.			
<input type="checkbox"/>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즈베키스탄의 법률의 집행, 우즈베키스탄 국회(Олий Мажлиси)의 결정, 대통령 명령과 처분의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하고 있음.			
PART II : 주요 관련 집행법률			
<input type="checkbox"/> 사유화법			

○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효율적이고, 친시장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동법 제1조).

□ 하층토법

○ 본법의 입법취지는 지하자원의 점유, 수익 및 처분 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함이고, 본법의 기본 과제는 소비자들의 지하자원사용과 보호, 환경보호 및 자원이행시 작업수행의 안전보장 및 지하자원사용자, 개인, 사회 및 국가의 이익과 권리보호 만족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이용의 보장임(동법 제1조).

□ 자연독점법

○ 동법의 입법취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물품시장에서의 독점 주체의 활동과 관련된 관계의 규율과 소비자, 국가 및 독점 주체의 이익의 균형을 보장하는데 있음(동법 제1조).

□ 외국인투자법

○ 동법의 과제는 외국인투자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계경제시스템으로 편입시키는데 일조하기 하는 한편, 외국의 금융, 물적 및 지적 자원, 현대식 기술 및 운영 경험의 유치 및 합리적인 이용에 있음(동법 제1조).

PART III : 광업자원의 현황과 법제

□ 다량의 광업자원과 세제 혜택

○ 금·은·동 등 다양한 광업자원이 있음.

○ 광업자원과 관련한 다양한 세제 혜택제도가 변천되어 왔음.

□ 지하자원법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제2018-VII호 『지하자원법』 (1994년9월23일 제정, 2002년12월13일 변경, 2007년12월18일 변경)의 “제4조 - 지하자원의 소유”에서는, 『지하자원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소유이며,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고 여겨지고 있음.

○ 동법에 의하면, ‘광업권은 우즈베키스탄이 소유하는 곳의 광구를 이용하는 라이선스이며, 광구의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이념임.

PART IV : 정책 제언

□ 패키지형 교류 지향

○ 법제교류지원사업과 자원교류의 결합

○ 경제주체의 진출과 자원교류의 결합

-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수요조사의 필요

- 중소기업진출에 대한 지원

PART I : 우즈베키스탄의 현황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 2월 11일 가스전과 화학플랜트 건설사업 등이 결합된 총 30억달러 규모의 수르길 프로젝트를 양국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음. 이 프로젝트는 우즈벡 수르길의 가스전 개발과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이 결합된 사업임.

* 우즈벡 수르길



- 위치 :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인근
- 사업 내용 : 수르길 가스전의 개발·생산 및 가스화학플랜트 건설·운영
-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06.03 정상회담시 한국가스공사-Uzbekneftegaz간 공동개발 협력 약정 체결

- ~'07.2 가스화학단지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07.8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우즈벡 내각 승인 완료
- '07.10 한국컨소시엄 구성
- '08.2 합작투자회사 협정서 체결
- '08년말 최종 투자결정 및
- '10.2.11 수르길 프로젝트 투자협정서를 체결

-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가스전(6억달러) 개발과 화학플랜트(24억 달러) 건설로 추진되는 수르길 프로젝트 투자협정서를 체결하고 향후 압축천연가스(CNG)등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음.
- 또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다져나가자는 데도 동의함.
- 한국의 주요 ODA 협력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교육, 신재생에너지, 산업·인프라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우즈베키스탄을 2010년도 지식공유사업 중점지원국으로 선정, 거시경제 관리, 혁신, 수출·투자 촉진 등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적극 공유할 계획 임.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연관 사업 패키지(Package)형 진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LNG 액화기지 민간사와 공동 투자 ⇒ OLNG, RASGAS, YLNG 등 가스자원 확보 및 투자수익 제고 <input type="checkbox"/> LNG도입을 이용한 LNG선 건조 및 운영(국적선 17척) ⇒ 국내 선박건조 업체의 해외 LNG 선박 수주로 고부가가치 조선 강국

위상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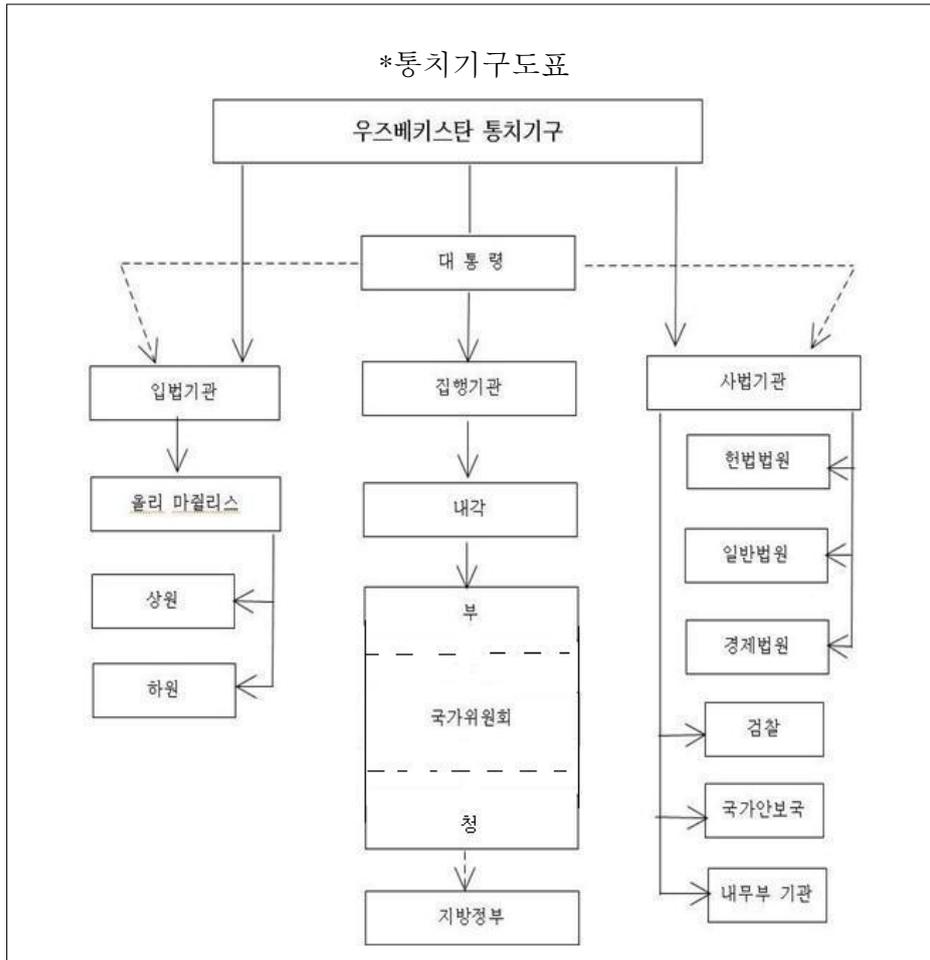
- 해외 LNG 인수기지 민간사와 공동 투자 ⇒ 현재 멕시코만 인수기지 등 투자 모색 중
- 해외 LNG 인수기지 기술 수출 ⇒ 태국 PTT LNG 인수기지 건설을 민간사와 공동 추진
- 중국 Fujian LNG 터미널 운전·보수 및 시운전 기술 용역 제공
- 러시아 PNG 도입 연계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자원개발 사업 추진 중 ⇒ 러시아 가스프롬과 다양한 분야 협력 추진 중

- 이하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지하자원에 대한 현황 및 관리체계, 그리고 법제를 알아보고, 이에 관한 대응방안을 분석하였음.



□ 개 요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즈베키스탄의 법률의 집행, 우즈베키스탄 국회(Олий Мажлиса)의 결정, 대통령 명령과 처분의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하고 있음.
- 내각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국회에 대하여 자신의 임무에 대해 책임을 짐.



□ 정부조직과 집행법률

○ 경제부

1) 기능 및 과제

- 국가 장기발전전략 및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
- 균형 있는 사회-경제정책의 수행;
- 중-단기사회경제발전 전망 및 프로그램 개발

- 자연자원, 과학-기술자원, 노동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 경제 및 사회수준의 분석;
- 거시경제지표의 분석;
- 사회-경제발전발향의 결정;
- 경제 불균형의 제거;
- 연례 및 분기별 경제발전상황 보고서의 작성;
- 대통령 및 정부가 채택한 경제발전 및 경제개혁 결의 이행의 감독 등.

2) 관련 집행법률

- 관련 집행법률 불확정¹⁾

○ 국가반독점경쟁발전위원회

1) 기능 및 과제

- 경쟁발전;
- 독점규제;
- 부실기업의 조직개편;
- 경쟁 활동의 보장;
- 소비자권리보호;
- 광고활동 보장 등.

2) 관련 집행법률

- 상품시장의 경쟁 및 독점제한법(Закон О конкуренции и ограничении монополис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оварных рынках);
- 자연독점법(Закон О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олиях);

1) 우즈베키스탄 법률 중에는 해당 법률에 권한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 시행령에도 권한기관에 대해 밝히지 않은 경우는 “관련법률 불확정”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소비자보호법(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광고법(Закон О рекламе).

○ 국가환경보호위원회

1) 기능 및 과제

-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
- 자연자원의 이용 및 재생;
-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정책의 개발 및 이행;
- 환경평가의 수행;
-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 이용에 관한 행정법규 위반과 관련된 물질의 검사 및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벌 및 사법당국에 검토 의뢰 등.

2) 관련 집행법률

- 대기환경보호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атмосферного воздуха);
- 자연보호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природы);
- 산림법(Закон О лесе);
- 토지보호법(Закон Об охраняемых природ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 폐기물법(Закон Об отходах);
- 지하자원법(Закон Об недрах);
- 식물보호 및 이용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растительного мира);
- 동물보호 및 이용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животного мира);
- 표준화법(Закон 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 국가지질광물자원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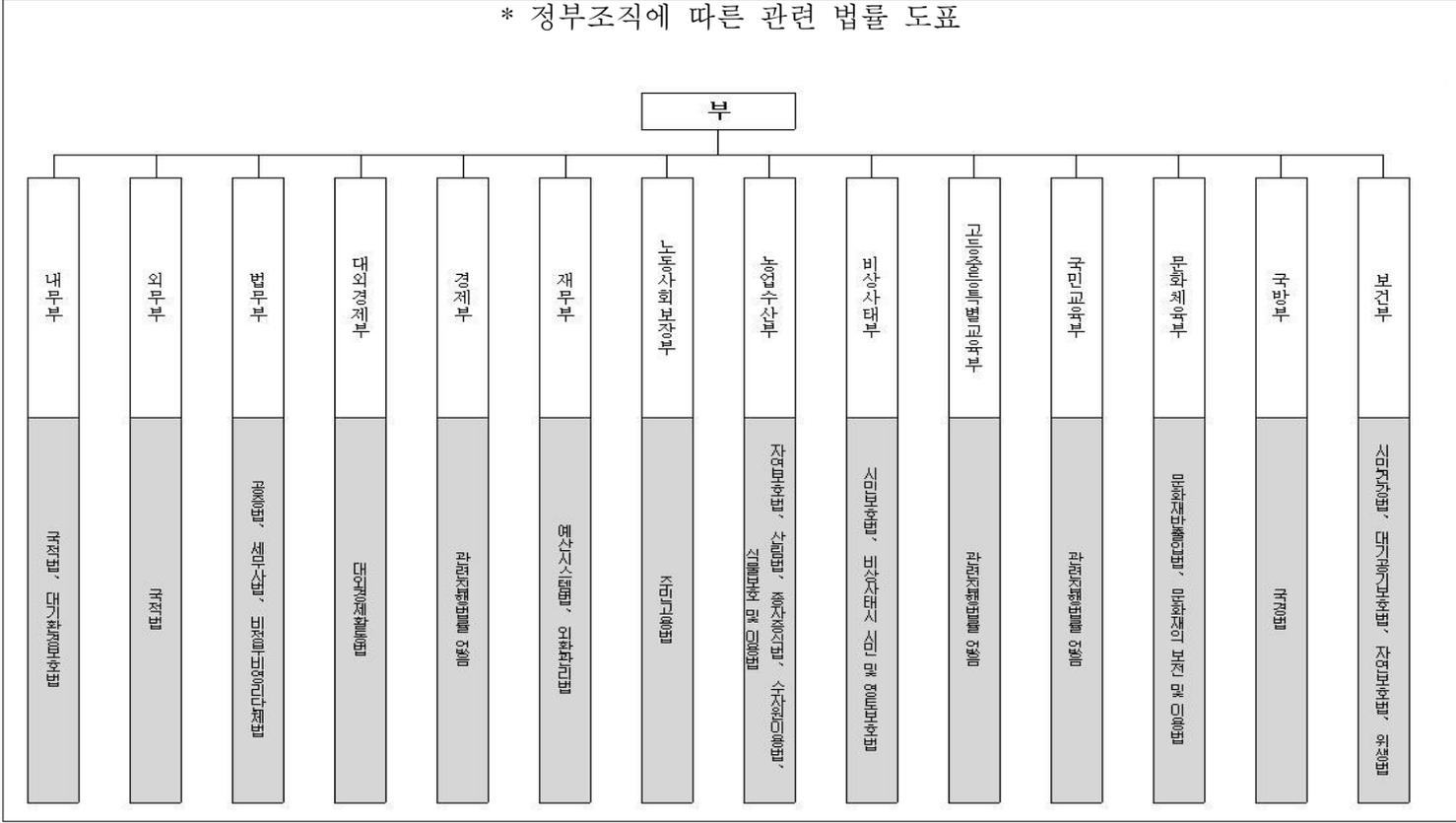
1) 기능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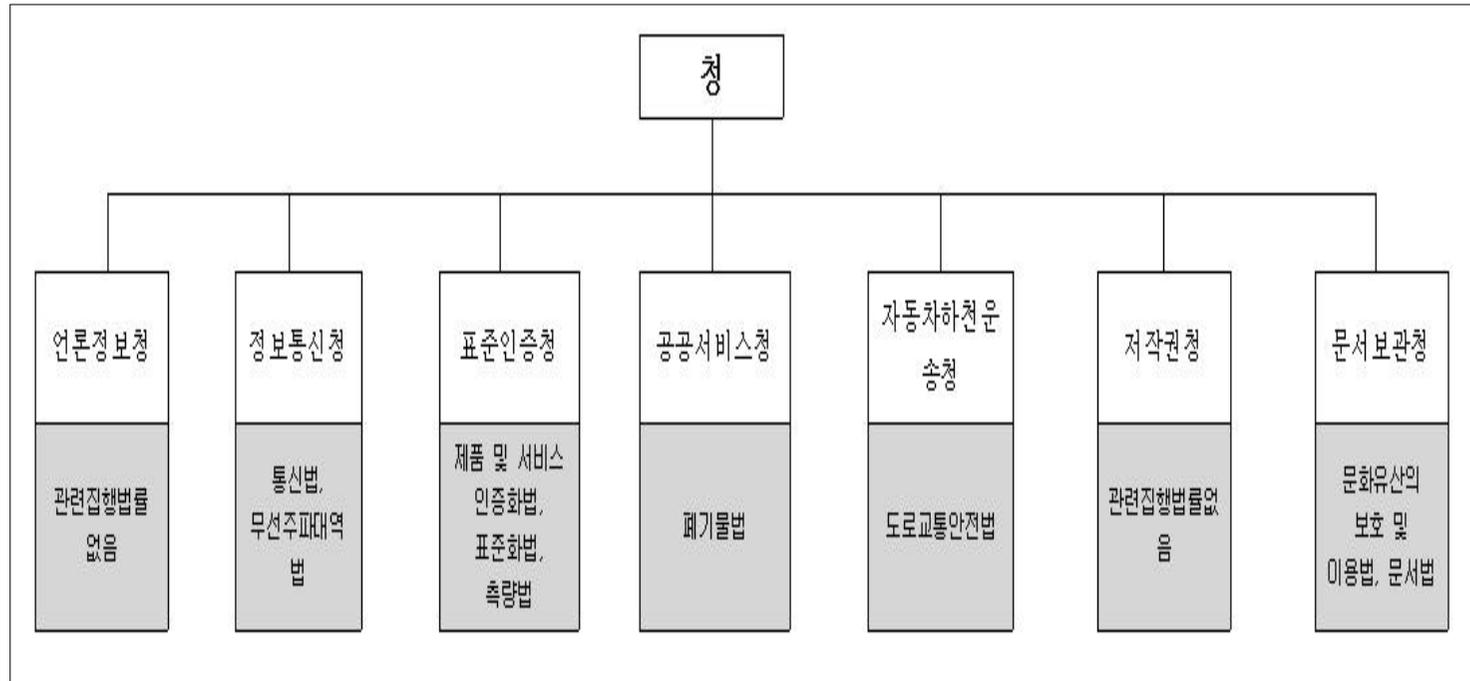
- 내각에 업무활동의 보고;
- 광물자원의 지질연구;
- 광물자원지의 예상 및 발견;
- 광물자원(탄화수소 제외) 개발의 타당성 평가;
- 광물자원 국가기금의 관리;
- 지질연구와 관련된 업무의 조율;
- 지질연구목적의 자원산지이용권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등.

2) 관련 집행법률

- 수자원법(Закон О воде и водопользовании);
- 하층토법(Закон О недрах).

* 정부조직에 따른 관련 법률 도표





PART II : 주요 관련 집행법률

■ (Закон О разгосударствении и приватизации)

□ 입법취지

- 1991년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회사 및 공장들은 국유로 남게 되었음.
- 한편, 대부분의 회사들이 신규 투자 없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었고, 국가는 운영이 부실한 국영기업을 사유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동법은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효율적이고, 친시장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동법 제1조).

□ 주요 내용

○ 국유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주체

- 우즈베키스탄 시민 및 외국;
- 개인기업;
- 외국법인 및 외국인.

동규정에 의거 외국법인 및 외국인도 우즈베키스탄 사유화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동법 제5조).

○ 사유화 대상

국가소유의 기업 및 부동산 등이 사유화의 대상이됨(동법 제4조 제1항).

- 사유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산
 - 토 지;
 - 지하자원;
 - 문화재;
 - 군사시설물;
 - 우라늄 생산 기업;
 - 기타 법률이 정한 분야의 자산(동법 제4조 제2항).

- 사유화의 형태 및 조건
 - 국영기업을 사기업으로의 전환;
 - 국가재산을 경매 등을 통해 개인기업 및 개인에게 매각(동법 제6조).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사유화 대상물 또는 사유화 대상물의 주식을 우즈베키스탄 내각 또는 담당기관이 정한 절차에 의거 취득할 수 있음(동법 제6조 제2항).

- 가 격

사유화 대상물의 매각가격은 사유화 시기의 시장가를 고려하여 결정함(동법 제9조).

- 소유권의 이전
 - 매수인이 사유화 물건을 매수한 경우, 국가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증서(ордер, удостоверяющий право собственности)를 부여하게 됨(동법 제15조 제1항).
 - 한편,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소유권증서는 최초 납입금(первый выкупной взнос)의 납입 후 교부됨. 다만, 이 경우 완납 시까지 국가는 동재산에 대해 재

산의 매매 또는 무상양도 등의 금지를 포함한 재산의 처분권(право распоряжения)을 제한할 수 있음.

- 실무상, 사유화대상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통상 수년에 걸쳐 회사 또는 사유화 매물의 정상화를 위해 일정금액의 투자의무가 부여되는데, 투자의무의 이행이전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소유권증서는 처분권은 수반되지 않은 소유권임을 주의하여야 함.

○ 의 무

- 사유화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일정기간동안 상호의무 및 사유화대상의 활동 조건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음:
 - ① 일정기간 동안 사유화 대상 기업의 목적(профиль) 및 생산량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
 - ② 직원 수의 유지 및 변경;
 - ③ 일정한 소비자에 제품의 납품;
 - ④ 노동조건 개선 및 환경보호 등의 대책 수립 등.
- 통상 이러한 조건들은 사유화시 사유화대상물의 가격 발표와 함께 제시가 된다(동법 제18조).

■ (Закон О недрах)²⁾

□ 입법취지

- 본법의 입법취지는 지하자원의 점유, 수익 및 처분 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함이고, 본법의 기본 과제는 소비자

2) 우즈베키스탄의 “하층토법”은 우리나라의 “지하자원법”에 해당함.

들의 지하자원사용과 보호, 환경보호 및 자원이행시 작업수행의 안전보장 및 지하자원사용자, 개인, 사회 및 국가의 이익과 권리보호 만족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이용의 보장임(동법 제1조).

□ 주요 내용

○ 하층토 및 지하자원(광물자원)의 소유권

- 우즈베키스탄에서 하층토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가짐(동법 제4조).
- 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채굴한 지하자원의 소유권은 국가, 기업 및 개인이 가질 수 있음.
- 한편, 광물자원의 개발과정에서 취득한 부차적인 광물에 대한 소유권은 지표내부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동안 가짐. 예를 들어, 금광을 개발하다가 부차적으로 채굴하거나 금의 정제 과정 등에서 발견된 광물자원의 소유권은 금광사용자가 가지게 됨.

○ 하층토의 관리주체

- 우즈베키스탄에서 지하자원에 대한 관리는 우즈베키스탄 내각(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해당 지방정부(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국가환경보호위원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по охране природы), 국가지질광물자원위원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по геологии и минеральным ресурсам), 국가 산업작업수행안전 및 광물자원감독국(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инспекция по надзору за безопасным ведением работ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горным деле и коммунально-бытовом секторе)임.

○ 하층토이용권의 등록

- 지질학적 연구, 광물자원의 채굴, 지하시설물의 건설 및 이용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층토이용권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하층토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동법 제11조).

*** 지하자원사용세**

○ 납세자

- 납세자는 지하자원의 사용자임. 즉, 지하자원을 채취하는 자 및 지하자원의 가공을 수행하는 자임(세법 제243조).

○ 과세대상

- 채굴한 지하자원의 판매가임(세법 제244조).

○ 세율

- 지하자원사용세율은 0.4%-30%까지임.

○ 광물자원산지의 국가리스트 작성

- 국가는 매장가능성 광물자원산지의 국가리스트를 작성함.
- 국가리스트에는 지질-경제평가 및 개발조건, 자원의 매장량 및 매장가치를 기입함.
- 국가리스트에 포함된 정보는 자원산지의 하층토사용권(право пользования участками недр)에 대한 경매 및 직접 협상을 통해 하층토사용권을 제공할 시 반드시 참조되어야 함.

- 국가리스트의 작성 절차 및 담당기관은 우즈베키스탄 내각이 정함(동법 제13조).

○ 사용자

- 하층토의 사용자는 법인 및 자연인이다(동법 제20조).

○ 하층토의 사용기간

- 하층토의 사용기간은 임시사용(срочное пользование) 및 영구사용(бессрочное пользование)의 형태로 부여된다. 사용권의 기간은 하층토사용권을 등록한 때로부터 기산됨(동법 제22조).

- 임시사용권은 ① 지질연구(최대 5년), ② 광물자원의 채굴(광물자원산지개발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을 부여함) 등에 부여됨.

- 하층토 사용기간은 사용기간 종료 6월 이전에 사용자가 사용연장신청을 함으로써 연장될 수도 있음. 연장여부에 대한 결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함(동법 제23조).

- 한편, 영구사용권은 광물자원 채굴과 상관없는 지하시설의 건설 및 이용과 특별히 지질학적 보호가 요구되는 대상의 구성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제공됨(동법 제24조).

○ 하층토 이용권에 대한 라이선스

- 사업적 리스크를 조건으로 하는 지질조사, 광물자원의 채굴 등을 목적으로한 하층토 이용권의 발생 근거는 라이선스임(동법 제26조). 즉, 자원개발을 위해 지질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경우에 라이선스가 요구됨.

- 라이선스는 일정한 경계 내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하층토의 사용권자의 권리를 입증해주고 하층토의 사용조건을 결정함. 동시에 하층토사용에 관한 수개의 라이선스의 발급도 가능함.
- 라이선스에는 ① 라이선스권자에 대한 정보, ② 하층토 이용과 관련된 작업의 목적, ③ 사용권이 부여된 하층토의 대략적인 면적(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параметры), ④ 하층토의 사용기간 및 작업착수시기, ⑤ 하층토의 이용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하층토 지질연구에 자원을 조달하는 법인 및 개인은 탐사가 진행 중인 산지의 광물자원채굴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에 배타적 권리를 갖음(동법 제26조).
- 라이선스는 경매(публичные торги) 및 직접 협상의 결과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게 발급이 됨.
- 한편, 하층토이용권이 법인이 아닌 법인이 결합체(объединение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에 부여된 경우, 라이선스는 법인의 결합체의 참여자 중 1인에게 부여됨.
- 이 경우 라이선스에는 동 법인이 법인결합체를 대신하여 라이선스를 부여받는다는 사실 및 법인결합체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모든 법인들을 명시하여야 함.
- 라이선스의 발급기관은 국가지질자원위원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Ф по геологии и минеральным ресурсам)임(동법 제27조).

○ 부차적 광물(Горный отвод)

- 일반적으로 하층토에는 석유, 가스 등의 자원 이외의 다양한 광물들이 발견됨.
- 본법은 부차적 광물의 개발권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광물자원채굴 라이선스에 따라 하층토지의 제한된 면적과 깊이에서 부차적 광물의 사용권을 부여함. 다만, 부차적 광물의 채굴은 반드시 하층토사용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동법 제28조).

○ 하층토사용권의 양도

- 광물자원채굴 라이선스권자는 라이선스를 발급한 당국과 합의에 따라 하층토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이 경우 타인은 라이선스에서 정해진 조건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동법 제30조).

○ 사용자의 권리

- 라이선스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광물자원의 채굴과정에서 취득한 부차적인 광물자원의 이용;
- 사용자가 개발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질 및 기타 정보, 채굴 광물자원의 사용;
- 광물자원과 관련된 기술 및 개발 계획 등의 변경;
- 광물자원산지개발과정에서 채굴규격(표준)의 결정;
- 추가적인 허가 없이도 부여받은 라이선스에 의거 부차적 광물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질연구의 수행;

- 하층토의 사용과 관련된 개별업무 또는 복합 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과 계약체결;
- 광물자원의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때와 비교하여 증대한 상황의 변화로 광물자원개발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 때 하층토이용조건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기타 법령이 정한 권리.

○ 사용자의 의무

- 하토층의 목적에 맞는 사용;
- 하토층의 사용 및 광물자원의 정제 업무 등에 있어 법규 준수;
- 자원개발에 있어 기술적 요건 및 개발계획의 준수;
- 자원개발 시 지질 및 광구측량술 관련 서류의 작성;
- 채굴한 광물 및 잔존 광물의 수량 및 질에 대한 기록;
- 채굴한 광물의 수량에 대한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제공;
- 직원 및 자원산지 주민들의 안전보장 등(동법 제34조).

○ 사용권의 제한, 중단 및 종료 사유

- 하토층사용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한, 중단 또는 조기에 종료된다:
 - ① 하토층의 사용과 관련되어 주민의 건강 및 생명의 위협 및 환경오염의 위험 발생;
 - ② 사용자가 1년 동안 하토층의 사용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③ 사용료의 반복적인 미납;

④ 라이선스의 기본 요건의 위반.

- 하토층사용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료된다:

① 사용기간의 종료;

② 사용자의 반납;

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법인의 해산 또는 개인이 사업 활동 중단.

- 사용권의 제한, 중단 및 종료 절차는 우즈베키스탄 내각이 정한다(동법 제34조).

○ 기 타

- 본법은 외국인투자자 권리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법인 및 자연인과 차별을 두고 있지 않음.

- 본법은 우즈베키스탄 생산물분배협정법 이후 채택이 되었고, 본법과 생산물분배협정법은 석유, 가스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임.

■ (Закон О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олиях)³⁾

□ 입법취지

- 동법의 입법취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물품시장에서의 독점주체의 활동과 관련된 관계의 규율과 소비자, 국가 및 독점주체의 이익의 균형을 보장하는데 있음(동법 제1조).

3) 본법의 “자연독점”의 의미는 물품시장에서 일정한 물품에 대한 수요의 충족을 위해 경쟁의 유발이 기술적인 특징에 의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동법 제3조).

□ 주요내용

○ 독점주체활동 통제 분야

- 송유관을 통한 석유제품, 가스, 석유운송;
- 전기 및 열에너지의 생산 및 운송;
- 철도인프라의 이용;
- 우편서비스;
- 상하수도 서비스;
- 항공 항해 서비스;
- 운송터미널 서비스(동법 제4조).

○ 자연독점주체의 활동에 대한 감독

- 자연독점주체의 활동에 대한 감독은 국가반독점기관에서 수행함.
- 국가반독점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자연독점의 주체가 국가통제를 받고 있는 물품의 생산과 관련 없고, 동거래 금액이 자연독점주체의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또는 기본자산의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래;
 - ② 자연독점의 주체가 국가통제를 받고 있는 물품과 관련이 있고, 동거래의 금액이 자연독점주체의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본자산 일부의 사용권의 양도;
 - ③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량에 관한 계약의 이행;

- ④ 물품 가격의 형성 및 적용 절차에 준수;
- ⑤ 자연독점 주체의 설립, 조직변경 및 해산.

- 자연독점주체가 상기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반독점기관에 해당 정보 및 해당 행위의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반독점기관은 신청 서류의 미비 또는 정보의 제공이 불충분한 경우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동법 제9조).



□ 목적 및 과제

- 동법의 목적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투자의 법적 근거 및 절차를 정하는데 있음.
- 한편, 동법의 과제는 외국인투자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계경제시스템으로 편입시키는데 일조하기 하는 한편, 외국의 금융, 물적 및 지적 자원, 현대식 기술 및 운영 경험의 유치 및 합리적인 이용에 있음(동법 제1조).

□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령은 동법과 외국인 투자자의 보장 및 보호에 관한 법률(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и мерах защиты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및 기타 법령이 있음(동법 제2조).

□ 외국인 투자 형태

- 외국인투자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투자를 수행할 수 있음:
 - ① 지분참여(은행, 보험회사 및 우즈베키스탄 법인 및 자연인과 합작법인 설립 등);
 - ② 외국인투자자 소유의 회사의 설립;
 - ③ 우즈베키스탄 거주자가 발행한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취득;
 - ④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 의장, 노하우 등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투자;
 - ⑤ 자원 탐사, 채굴 및 사용권 등의 취득;
 - ⑥ 상가건물, 주거지, 토지 점유 및 사용권(토지 임차권 포함) 등의 취득;
 - ⑦ 기타 외국인투자자는 우즈베키스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형태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동법 제5조).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법령이 부여하는 모든 권리, 보장 및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유화를 포함하여 기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도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등기한 때로부터 취득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등기 절차는 우즈베키스탄 내 각이 정함(동법 제6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지위

-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활동을 수행 시 외국인 투자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함.
- 외국인투자자에게는 공평한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완전하고 영속적인 안전을 보장한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위는 우즈베키스탄이 비준한 국제조약이 정한 지위보다 더 열악하여서는 아니 됨(동법 제9조).

□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 투자 대상 및 투자활동의 결과물을 점유, 사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우즈베키스탄으로 대출 등의 형태로 차입할 수 있는 권리;
- 외화를 구입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현지 화폐인 숨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우즈베키스탄 법령에 의거 대출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투자자산이 국가수용이 될 경우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불법행위 등의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동법 제10조).

□ 외국인투자의 의무

- 우즈베키스탄 법령을 준수할 의무;

- 우즈베키스탄 법령에 따른 세금 등을 납부할 의무;
- 투자프로젝트가 위생, 환경 기준 등에 대한 우즈베키스탄법령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전문가의 의견서 취득 의무 등(동법 제11조).

□ 외국인노동자의 채용

-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령의 따라 모든 국적의 시민들과 자유롭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들은 해당 복수비자를 취득함으로써 고용계약기간동안 우즈베키스탄에 자유롭게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함(동법 제14조).

PART Ⅲ : 광업자원의 현황과 법제



□ 주요광산물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세계순위(%)
금(t)	82	82	82	82	88.4	84.2	76.6	72.9	73.2	9(3.4)
은(t)	150	150	150	150	150	150.0	150.0	150.0	150.0	17(0.8)
동광(kt)	65.0	97.3	80.0	82.0	82.8	103.5	103.5	103.5	103.5	21(0.5)
전기동(kt)	75.0	97.3	80.0	82.0	84.9	115.0	115.0	115.0	115.0	25(0.6)
텅스텐(t)	250	250	250	300	300	300	300	300		9(0.3)
아연(kt)	72.5	80.1	78.9	58.1	58.1	42.0	46.0	72.0	46.0	29(0.4)
우라늄(t)	2,350	1,962	1,860	1,770	2,016	2,020	2,225	2,270		7(5.6)

□ 광업세제의 변천

- 지금까지의 수년간에 있어서 세제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보여졌음 : ① 귀금속에 대한 로열티 과세의 강화.
- ② 구리채굴 기업에 대한 초과 이득세 (Excess Profit Tax : EPT)의 과세 기준의 변경(실질감세).
- ③ 매상고에 차지하는 수출 비율이 높은 기업의 법인세감세.
- ④ 금시황의 양등을 받아서 JV 기업에 부여한 세제특전을 폐지하는 계획, 로열티 과세는 2005년 1월부터, 금이 5~31.7% (2009년 현재는 5%), 은이 8~53.7% (동(同) 8%)로 세율이 대폭 인상 됨

⑤ 구리의 수출 가격에 따라서 과세되는 EPT는, 우즈베키스탄의 유일한 구리생산자인 AGMK(Almalyk Mining & Metallurgical Combine)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과세 기준변경에 의해, AGMK에 있어서는 실질감세가 되었음.

- 2006년 후반에는, 외국기업에게 투자시에 부여된 면세에 가까운 세제특전이 폐지되었음.



-

□ 개요·기본이념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제2018-VII호 『지하자원법』 (1994년9월23일 제정, 2002년12월13일 변경, 2007년12월18일 변경)의 “제4조 - 지하자원의 소유”에서는, 『지하자원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소유이며,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고 여겨지고 있음.
- 동법에 의하면, ‘광업권은 우즈베키스탄이 소유하는 곳의 광구를 이용하는 라이선스이며, 광구의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이념임4).

□ 광업권(지하자원광구이용권 라이선스)의 종류

- 직접적인 광업생산을 위한 광구
 - ① 지질조사를 위한 지하자원광구이용권 라이선스(※탐사권에 해당)
 - ② 광물자원의 실험적·산업적 채굴을 위한 지하자원광구이용권 라이선스(※시굴권에 해당)

4) 이하, 우즈베키스탄의 광업권은 『지하자원광구이용권 라이선스』로 표기함.

- ③ 광물자원의 채굴을 위한 지하자원광구이용권 라이선스(※채굴권에 해당)
- ④ 광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폐기물의 이용을 위한 지하자원광구이용권 라이선스(※광업폐기물로의 금속회수 등의 유효이용권)

- 배타적 광구

- ⑤ 광물자원의 채굴에 관계되지 않는 지하시설의 건설 및 가동을 위한 지하자원광구이용권 라이선스(※석유등의 지하비축, 폐기물의 지하공동보관·매설을 위한 배타적 광구)
- ⑥ 특별히 보호되는 지질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지하자원광구이용 라이선스(※자연유산, 유적,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다고 판단되는 지질단위, 과학적·요양 혹은 관광의 목적으로 보존해야 할 동굴 등을 위한 배타적 광구)
- ⑦ 貴石, 고생물학적 또는 그 밖의 지질학적 실험자료를 모으기 위한 지하자원광구이용권 라이선스

□ 라이선스의 신청처와 교부기관

- ① 『지하자원광구이용권의 교부의 순서 및 조건에 관한 규정(대통령령PP649호)』인 제43항에서는, 제44항의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지하자원광구의 이용권 라이선스를 교부하는 지정기관은 “국가지질·광물자원위원회”이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 ② 이 교부에 대해서는 동 제46조에 『경매의 결과에 근거해 교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48조에는 『직접교섭에 근거해 교부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음.
- ③ 동 대통령령 제44항에는, 『폐기물의 보관과 매설에 이용되는

지하시설의 건설 및 가동을 위한 지하자원광구의 이용권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직접교섭에 근거하고, 국가환경보호 위원회에 의해 교부된다』 라고 되어 있음.

*** 광업권의 신청~취득절차**

○ 『지하자원광구이용권의 교부의 순서 및 조건에 관한 규정(대통령령PP-649호)』의 제Ⅶ장 제50~76조에 『지하자원광구의 이용권 라이선스의 획득을 위한 경매의 실시 순서』가, 제Ⅷ장·제78~93조에 『직접교섭의 결과에 근거하는 지하자원광구의 이용권 라이선스의 교부의 순서』가, 제Ⅸ장·제95~98조에 『지하자원광구의 이용권의 라이선스의 작성과 교부, 국가등록의 순서』가 각각 규정되어 있음.

□ 광업권의 유효기간

- 『지하자원법』의 제22조, 23조에 광구이용권 라이선스의 기간은 다음과 같음.
 - 지하자원광구이용권 라이선스의 기간(제22조):
정기(일시적)이용 혹은 무기한 이용이 가능함. 그 시작일은, 지하자원이용권의 국가등록일로 함.
 - 라이선스 종별의 기간(제23조)
 - ① 지질조사 : 5년까지
[※지질조사를 위한 지하자원광구이용권 라이선스(※탐사권에 해당)가 해당됨]
 - ② 광물자원의 채굴 및 광업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이용:
FS에 의해 규정된 조업 기간(※채굴권에 해당)

- ③ 광물자원의 채굴을 위한 지하자원광구이용권 라이선스(※채굴 권에 해당),
- ④ 광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폐기물의 이용을 위한 지하자원광구이용권 라이선스(※광업폐기물로의 금속회수 등의 유효이용권)가 해당한다]
- 貴石, 고생물화석 등의 지질학적 실험자료의 채취: 2년

□ 지하자원의 할당지 [제28조]

- 지하자원은 한정된 면적 및 심도의 지하자원 구역을 할당지로서 이용함.
- 이 할당지는, 국가산업·광업 보안 감독기관에 의해 제공됨.

□ 지하자원 광구 이용권 라이선스의 양도[제30조]

- 광물자원의 채굴 라이선스, 광업에 의해 발생한 폐기물의 이용 라이선스의 소유자는 라이선스를 교부한 기관이라는 조정에 의해, 법률로 규정되는 순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에 의해 규정되는 조건의 이행 의무를 지는 것으로 지하자원의 이용권 라이선스를, 완전하게 혹은 부분적으로 양도할 수가 있음.

□ 지하자원 이용자의 권리[제32조]

- 지하자원 이용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짐:

- ① 스스로의 사업 활동의 결과, 획득한 지질정보 및 그 외의 정보, 채굴한 광물자원을 이용하는 것.
- ② 채굴 및 가공 공정으로 발생한 인공적인 광물성 구성물을 이용하는 것.

- ③ 사업활동의 실시 방법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는 것.
- ④ 설계, 계획에 수정을 더하는 것.
- ⑤ 이용조건을 응용하는 것.
- ⑥ 할당지에서 추가적 허가 없이 탐사를 실시하는 것.
- ⑦ 할당지 혹은 정해진 순서로 제공된 토지의 범위내에서 사업 활동의 실시에 필요한 산업적 혹은 사회적 시설을 건설하는 것, 혹은 공동시설·교통로를 이용하는 것.
- ⑧ 지하자원 이용에 관한 일부 종류의 활동 혹은 종합활동의 실행자를 부르는 것. (설계·개발·건설 등에 관한 외주, 하청을 주는 행위 등)
- ⑨ 경제상황 변화 등에 의해 이익의 발생이 없어졌을 경우, 라이선스가 교부된 시점의 상황과 현저하게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지하자원의 이용조건을 재검토를 신청하는 것.

□ 지하자원 이용자의 의무 [제33 조]

- 지하자원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음:

- ① 지하자원구를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
- ② 지하자원의 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실시기술의 기준 및 규칙을 준수하는 것.
- ③ 설계·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
- ④ 광상의 개발·채굴에 관계하지 않는 그 외의 목적으로 지하자원을 이용할 때에 지질학적 서류, 광산 조사에 관한 서류, 그 외 서류를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것.
- ⑤ 주요광종 및 수반광종, 부수적 성분의 채굴 및 채굴 대상으로 하지 않는 광량과 품위, 처리 공정으로 발생하는 인공적인 광물성 구성물의 가공품의 양과 질을 등록하는 것.

- ⑥ 채굴되지만 일시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보관되는 수반광종, 부수적 성분을 보존하는 것.
 - ⑦ 채굴, 가공시에 손실을 기준을 준수하는 것.
 - ⑧ 고품위부를 선택적으로 채굴하지 않는 것.
 - ⑨ 주요광종, 수반광종, 부수적 유용 성분의 매장량의 데이터, 그 수정에 관한 정보, 광징지(鑛徵地)나 처리에 수반해 발생하는 인공적인 광물성 구성물의 관리 정보를 국가 지질·광물자원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 ⑩ 채굴자원량에 관한 정보가 규정된 순서로 제공하는 것.
 - ⑪ 광업활동의 영향 범위내에 있어서의 종업원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 ⑫ 사업활동의 안전한 실시, 사고 방지책의 실시, 사고 대처계획의 책정을 확보하는 것.
 - ⑬ 기업활동, 채굴에 관계하지 않는 지하설비의 폐쇄 또는 활동정지가 규정된 순서로 실시하는 것.
 - ⑭ 폐기물 퇴적장의 경사면 안정, 채굴철거지의 녹화, 안정정형의 실시, 토양침식 방지책을 확보하는 것.
 - ⑮ 환경보호대책, 지하자원의 이용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토지나 자연을 복원하는 것.
 - ⑯ 법률에 따르는 상기 이외의 의무를 지는 것.
- 지하자원 이용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현지 법인 등록
- 외국 법인은 지하자원 이용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법인 등록이 필요함.
- 우라늄의 개발을 위한 라이선스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회법령 제N222-11호(2001년 5월 12일 공

포)에 의하면, 다음의 사업 활동을 위해서는 라이선스의 취득이 필요함:

- ① 폭약·유해·화약이 들어 있는 물질, 유해물질의 연구·제조·보관·수송
- ② 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연구·시험·실험. 방사성 물질용의 보관소의 설계·건설·설비 설계·방사능 누출 방지 장치의 설계와 제조
- ③ 방사성 물질의 채굴·제조·리사이클·사용·보관·수송, 방사성 폐기물의 이용·무해화 방사성 물질 취급에 관한 신청은 법인만이 가능하고, 방사능 취급 라이선스의 인가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각료회의가 실시함.

*** 광업 세제**

○ 광업 관계의 세는, ① 이익세, ② 재산세, ③ 수자원 이용세, ④ 지하자원 이용세(로열티), ⑤ 사회 인프라 개선·발전세, ⑥ 공화국 도로기금에의 지불금, ⑦ 예산외의 연금 기금에 대한 의무적 지불금, ⑧ 초중학교 교육 기금에 대한 의무적 지불금, ⑨ 통일사회 지불금, ⑩ 배당세, ⑪ 부가가치세 등이 있음



-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영기업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일환으로서 그 주식의 지분비율이 낮은 권익에 관계되어,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거나 그 준비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국가 지질·광물자원 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우량 금속 광상 광구에 관해서는 외자 도입을 전제로 한 리스트가 작성되고, 각료회의에 제출이 끝난 상태로 대통령의 승인 기다리는 상태에 있음.

* 석유 천연가스 국영 지주회사
“우즈베크 니후체 가스”의 주식의 매각

- 자본금 : 253,680,000,000Sum
- 직원수 : 74 명
- 국가자산위원회의 홈페이지상의 공개 정보 - 주식의 49%를 매각 의향
- 대통령령 제PP-672호(2007년 7월 20일)에 의해 「2010년 말까지 동사 49%의 주식을 매각한다」라고 되어 있음.



□ 기본이념

- 환경보호법 제8조에 의해 「환경보호·천연자원의 이용은 법률 등에 맞게, 국가관리된다」라고 규정되고 있음.
- 관리기관은 “국가 환경보호 위원회” 및 “지방정부 기관”으로 되어 있음.

□ 환경영향 평가제도

- 사업 내용·규모, 유해 물자의 사용·발생 등에 대한 3종의 카테고리 분류되어 국가환경평가심사를 함.

- 환경평가 심사기관은, “국가 환경보호 위원회”에 속하는 “국가 환경심사총국” 및 “각주 환경보호위원회”에 속하는 “각주 환경 보호심사기관”임.

□ 환경관련법

- 우즈베키스탄은 물부족의 지역이 많아, 지하수 오염 대책 등이 중시되고 있음.
- 광산개발은 수원 근처에 입지하는 것이 많아 주의가 필요함.
- 광업 관련세로서 수자원 이용세 및 관개 지역 등의 구분에 대응하여, 토지 이용세가 과세되는 것이 특징임.
 - 「환경보호법」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있어서의 국가 환경 심사에 관한 조령」
 - 「폐기물법」
 -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환경보호에 대한 주요한 법규 및 규칙」
 - 「물 및 수리 용법」
 - 「Novoiy 주에 있어서의 배타적 경제 수역」

□ 광업 관련 기관

- 부 처
 - 국가 지질·광물자원위원회
 - 국가산업·광업보안 감독국
 - 국가 환경보호위원회
- 금속 광업 공사

다음의 국영 금속 광업 공사가 있음.

- Navoi MMC(Navoi · Mining & Metallurgical Combine) : 금, 은, 우라늄, 텅스텐
- AGMK(Almalyk Mining & Metals Combine) : 동, 납, 아연

PART IV : 정책 제언



□ 법제교류지원사업과 자원교류의 결합

○ 우즈베키스탄의 법제수요조사의 필요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 많은 재정적·기술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예컨대, 자원개발을 위한 비용 및 그와 관련한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으로도 현재 공무원법과, 법령정보네트워크 등에 대한 관심 심이 많은 상황임

* 2009년 3월 한국법제연구원-우즈벡 타슈켄트 대학 간담회 결과

- 주로 행정법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이 미비한 상황임
- 민법상의 법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인터넷법령정보시스템인 LexUZ on-line시스템에 대한 개발에 관심이 많음.

□ 경제주체의 진출과 자원교류의 결합

○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수요조사의 필요

-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나라에 필요로 하는 사업의 조사 및 기존 사업의 진흥(예: 자동차 사업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높음. 그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중소기업진출에 대한 지원
 - 한·우즈베키스탄 간의 수르길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